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4, 6층(수서동, 하나빌딩)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37@naver.com

담당 : 박용복 국장

문서번호 시험 2021 - 298호

시행일자 2021. 7. 7.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수	번호		재	
			공	
처	리	과		
담	당	자	람	

제 목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관리 감독 철저 요청

1. 귀 기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타워크레인 사고는 최근 5년간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모든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 시에 건설안전전문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이하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안전점검(이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이하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4호, 2021.6.29 시행)을 개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시공자는 물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건축주 등 발주자와 설계자, 관리자가 법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점검 횟수와 대가가 없이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철저히 이행 또는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침’상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철저히 준수.

(1) 점검 실시는 타워크레인 1기당 기준임.

(2) 타워크레인 마스트 인상(텔레스코핑) 시마다 점검을 실시.

예) 25층 아파트 신축의 경우 점검 횟수

- 설치 시(10층까지) 1회
- 인상 시(10층부터 3층마다 실시) 5회
- 해체 시 1회

계 7회 / 1기당

(3) 타워크레인 점검 대가는 설치 시 외업(안전점검책임기술인 1인, 검사원 1인) 2일 + 내업 1일 이상, 해체 시 외업 3일 + 내업 2일 이상을 반영하여 ‘지침’ 제47조 5항에 따라 산정하여 받주.

(4) 타워크레인 인상 시 점검대가는 관계기관과 회당 1.2백만 원으로 책정, 협의한바 적정대가를 반영하여 부실한 점검이 되지 않도록 받주.

나.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시 점검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3항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 나목1) 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점검을 하도록 함.

다.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안전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

라.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작업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유자격자로 6인 이상을 한 팀으로 구성.

마. 설치·인상·해체 전에 특별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

참 부 : (1)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1부.

(2)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방법 1부.

(3)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검사원 자격요건 1부.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수신처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우정사업조달센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